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동대문 제4선거구 신복자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가 개정되면서 자연장의 정의가 기존의 수목, 화초,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,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(산분장)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.
- 이에 따라,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자연장지에서도 자연장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용하여,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방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.
-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장례 방식에 대한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, 시립자연장지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시민

들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